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27

발의연월일: 2023. 2. 9.

발 의 자:전봉민·김용판·박대수

이종성 · 김태호 · 정운천

김도읍 · 김승수 · 정동만

이주환 · 이헌승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법률 개정 당시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시행일도 함께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정비하려는 것임(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제2항·제3항 및 제58조"를 "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부칙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	제1조(시행일)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	
행한다.	<u>.</u>
1. 제14조, 제16조의4제2항·제3	1
항·제7항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 제26조의2제1항	
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	
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7조, 제38	
조제1항·제2항 및 제38조	
의2의 개정규정 중 "금융	
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4	
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	
분,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정, 제4	
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의 개정규정, 제46조의8제1 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 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8조 의 개정규정, 제87조의7제1 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 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제6항, 제8 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 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10 0조의21, 제104조의4의 개 정규정, 제121조의28제3항 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 소득"의 개정부분, 제121조 의30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 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 규정 및 제146조의2제1항 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 소득"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2. (생 략) <신 설>

<u>제2항·제3항</u>
2. (현행과 같음)
4. (10 6 年 10 日 10

3. 제58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u><신 설></u>	제12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에 대
	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
	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23
	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